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404호
----------	-------

2016. 6. 23.(목)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박봉순 의원 등 7명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6년 5월 31일
- 회부일자 : 2016년 6월 1일

다. 상정일자 : 2016년 6월 8일

-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봉순 의원)

가. 제안이유

-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이 ‘노인복지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을 개정하고, 위·수탁 관련사항 등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

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함.

나. 위탁운영 관련 위탁기간 및 위탁재산 무상사용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위탁기간 : 5년으로 하되 일회 갱신 (다만 수의 계약 시 두 번 이상 갱신 가능)

다.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재산 및 시설물 관리, 시설증개축 도지사승인, 시설물 훼손 시 손해배상 등

라. 조사 또는 검사, 위탁의 취소, 수익사업, 자체운영규정 사항에 대해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마. 부칙

- 적용례 : 위탁기간 5년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위탁운영 하는 자부터 적용.

다. 참고사항

○ 비용추계 : 해당 없음

○ 기 타 : 입법예고(충청북도의회 공고 제 2016-30호)결과, 제출의견 없음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오범진)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이 ‘노인복지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을 개정하고 위·수탁 관련사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본 개정안에서 규정한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도에서 위탁운영 중인 시설임.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에서는,

이용대상을 기존 “충북도 내 거주 60세 이상 노인” 에서 “이용대상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배우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는 단서조항을 포함하였음. 이는 복지관 부부 이용자의 확대 및 편의 도모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 안 제5조에서는,

사용료의 감면 대상을 기존 “65세 이상 노인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에서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함.

- 안 제6조에서는,

위탁운영 대상범위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였고, 위탁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으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에 따른 것일 뿐 아니라, 현재 충청도에서 위탁운영 중인 장애인복지시설(충청북도 장애인복지관,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의 위탁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형평성을 맞춘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안 제10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수탁기관(법인)이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4조제3항과 관련된 [별표]에서는,

강당, 교육실, 회의실, 식당의 사용료(이용료)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특히 기존 조례에 명시되어 있던 사용료 중 이·미용실 사용료를 제외하였음.

- 복지관의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규정에 따른 노유자 시설로서, 이·미용(제1종 근린생활시설) 영업행위 제한에 해당되는 바, 사용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봉사 개념의 운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기존 조례에 명시되어 있던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조항을 본 개정안에서는 삭제하였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로 별도 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으며,
- 노인종합복지관을 직영이 아닌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례에서는 복지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국장, 부위원장은 복지정책과장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타지역 사례에도 없는 관의 과도한 운영개입으로 오히려 민간위탁의 긍정적 요소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본 개정안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의 정한 범위 내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였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③ 생략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1개월 경과한 날로 정하여 명칭 변경에 따른 준비기간을 부여하였고, 위탁기간 5년 규정은 소급이 아닌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운영을 하는 자로 규정함.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및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개정한 것으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안에서, 도 담당 부서 및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을 위탁운영 중인 기관과의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치고 입법예고 및 도의회 입법전문위원의 검토를 통해 작성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위탁 현황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2 (사직1동)
- 시설규모 : 부지 11,985㎡ / 건축 4,023.78㎡ (지하1층, 지상3층)
- 운영주체 : 학교법인 충청학원 (이사장 유선규, 관장 심의보)
 - ※ 위수탁 계약 (3년, 공개모집) : 2014. 1. 13 ~ 2017. 1. 12

- ▷ '98. 4. 17일 개관 ('97. 12. 14 준공)
- ▷ 도 노인회 위탁 : 2년 주기 3회 (수의계약)
 - 1차 ~ 3차 : '99. 1. 13 ~ '05. 1. 12 (6년)
- ▷ 학교법인 충청학원 위탁 : 3년 주기 3회 (공개모집)
 - 4차 ~ 6차 : '05. 1. 13 ~ '14. 1. 12 (9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여가 활동,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노인복지관”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2(사직동)에 둔다.

제3조(사업 및 기능) 노인복지관의 사업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전문상담 및 고용지원사업
2. 노인평생교육 및 복지후생사업
3. 노인건강증진 및 노인의료 재활사업
4. 취미생활, 사회참여활동 등 노인여가증진 사업
5.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제4조(이용대상 및 사용료) ① 노인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강당, 교육실, 회의실은 제1항에 따른 이용대상 외의 자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경우
3.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위탁운영 등) ① 도지사는 노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은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수탁기관은 수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3. 수탁기관은 보조금 및 사용료 등을 노인복지관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수탁기관은 노인복지관의 시설을 증개축할 경우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기관은 도지사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또는 검사 등) ① 도지사는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대하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수탁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끝나게 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위탁받은 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수익사업) 수탁기관은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

기 위하여 설치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자체 운영규정) 수탁기관은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운영규정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위탁기간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운영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수탁 계약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표]

사용료 기준표 (제4조제3항 관련)

구 분	기 준	사 용 료 (이 용 료)	비 고
강 당	주간 1회 2시간	3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 일. 공휴일 및 냉·난방 시는 평일요금의 20% 가산 ·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20% 가산 · 매시간 초과 시마다 20% 가산
교 육 실 회 의 실		20,000원	
식 당	1인 / 1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식 2,500원 · 국수 1,500원 	

관계법령 발췌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제 <2011.6.7.>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

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④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 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지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